



# 한국법제연구원의 창립 30주년과 미래



○ 최환용  
■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 chy9465@kiri.re.kr

한국법제연구원에는 늘 따라 붙는 수식어가 있다. 국내 유일의 법제전문국책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은 1990년 7월 1일 법제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법령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과 관리를 통하여 국가의 입법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법령정보의 신속·정확한 보급과 아울러 법률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지난 30년동안 한국법제연구원은 2000여건의 보고서, 500여건의 수탁과제 및 각종의 정기간행물 발간을 통해서 연구원에 부여된 국가 입법정책 수립의 지원, 법령정보의 신속·정확한 보급과 각종 학술단체 및 정부기관과의 연합 학술대회 등을 통한 법률문화의 향상이라는 미션을 충분히 잘 수행해 왔다고 평가받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특히 1990년 구소련법제를 비롯하여 체제전환국 법제를 연구하면서 통일에 대비한 법제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으며 고령사회대응법제, 디지털시대 대응법제 연구, 재정법제 연구 등 학계에서 수행하기 어려 우면서 미래사회에 대비한 특별한 법영역에 대한 연구성과를 축적해 왔다. 1994년에는 법학연구방법론에 덧붙여 사회과학적 조사방법론을 접목한 법의식조사연구를 시작했으며, 이후 주기적으로 법의식조사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한

국의 법치문화의 척도를 가늠케 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 왔으며, 2019년에는 통계청 승인 통계로 명실상부하게 법제 분야 유일한 통계생산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입법정책의 기초가 되는 고유한 연구영역으로서 입법이론연구, 입법과정론 연구, 입법기술 연구 등 입법학을 하나의 학문분야로 체계화하였고 이러한 연구성과는 국가의 입법체계를 정립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법령용어정비사업과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통해서 어렵다고 인식되어 왔던 법률문화를 국민에게 돌려주는데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기초가 천리안을 통해서 한국법제연구원이 제공했던 국가법령정보DB에 있었다는 점은 인터넷 시대 나이가 디지털시대를 관통하는 미래지향적 시각이 주효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으며, 영문법령번역사업을 통한 국가법령의 영문번역DB는 글로벌경제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해왔다.

이러한 지난 30년간의 연구성과들을 바탕으로 향후 30년을 어떻게 설계해 갈 것인가가 3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의 과제일 것이다.

먼저,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 재정립이다. 국책연구기관의 존재이유는 학술적 관점과 정책적 관점의 조화

를 통해서 실용적인 입법정책을 연구하고 이를 정책수요자에게 제시하는데 있다. 그렇다면, 연구과제의 개발에 있어서 창의성과 실용성, 그리고 개방성이 요구될 것이다. 법학뿐 아니라 인접 학문, 인접 정책연구소에서 나아가 과학기술계 연구기관과의 연계가 절실히 요청된다. 연구원 내부적으로는 연구기획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와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연구과제를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면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집단지성과 공론화를 통한 연구성과의 객관화이다.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연구성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하며, 이는 정책담당자뿐 아니라 시민사회, 국회관계자들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서 확보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 연구원은 연구방법론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연구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양성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사회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유연성과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시스템의 변화 또한 요청된다.

또한 여전히 어렵다고 인식되고 있는 법제연구의 성과를 정책수요자뿐 아니라 시민사회에 알기 쉽게 확산하려는 노력이 요청된다. 그동안 법제연구의 성과는 정책담당자의 전유물인 것처럼 인식되어 왔으나, 이를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능을 강화해 갈 필요가 있다. 베트남 하노이국립대학,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법과대학 등에서는 한국법센터의 설치를 요청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입법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연수프로그램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내적으로는 시민단체, 평생교육기관, 그리고 교육청등과의 연계를 통해서 법제연구의 성과를 교육과정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법제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법제분야의 국제교류와 협

력체계는 매우 미흡했다고 평가되며, 오히려 선진국 중심의 비교법적 연구방법론을 통해서 국내법제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면 이제는 우리 법제를 선진국에 적극 소개하고 이해를 시키려는 노력과 우리 법제가 민주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점을 모델화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따라 배우려는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 법령정보의 신속·정확한 수집과 보급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체류하는 전문가집단의 활용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유학하고 간 전문가 풀을 형성하고 이들과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원 내부 인력의 역량강화프로그램 또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해외에 체류하면서 글로벌 전문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연구원 차원에서 과감한 투자가 요청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30년간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면서 끊임없는 내부 혁신을 통해서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미래지향적 입법정책의 수립을 뒷받침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